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2 |
|----------|-----|

제출년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의 집행기구는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되어 있고, 재단 이사회의 의견개진 권한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사무국의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고, 또한 원활한 의사정족수 확보 및 대외적인 활동 증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조항에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상임이사의 선출방식을 추가하여 투명한 임원선출제도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

나. 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여 임원의 직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12.24.~2016.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마침

(7) 조례규칙심의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의 직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임원) ① ~ ④ (생략)</p> <p>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면(任免)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단서 신설></u></p> <p><u><신설></u></p> | <p>제7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u>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u></p> <p><u>⑥ 상임이사는 이사회</u>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
| <p>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 <p>제8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p><u>③ 상임이사는 이사의 직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u></p> <p><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p>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4조제3항의 2항목에 해당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어떠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사무국장 직제를
상임이사 직제로 변경하여 사무국의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은(02-3423-5768)